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958
----------	------

발의연월일 : 2017. 9. 1.

발의자 : 남인순 · 이학영 · 이원욱
김병기 · 신창현 · 윤호중
정춘숙 · 김해영 · 김현권
백혜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다.</p> <p>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6조(결격사유) ----- ----- -----.</p> <p>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p>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